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. 11. 15 선고 2019가단32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1. 15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2. 8. 14. 접수 제39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양성욱

별지